

## 규약 개정(안)

항목	개정 前	개정 後	비고
제3조 사업	<p>본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3. 생략</li> <li>4. 작업환경 개선과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조합원의 기술 및 교육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</li> <li>6.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여권신장에 관한 사항</li> <li>7. ~13. 생략</li> </ol>	<p>본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3. 생략</li> <li>4. <b>근로환경</b> 개선과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조합원의 기술 및 교육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</li> <li>6. <b>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와 남녀평등에 관한 사항</b></li> <li>7. ~13. 생략</li> </ol>	<p>현대적 의미 반영</p> <p>여성, 남성 차별이 아닌 성평등 차원으로 고려</p>
제34조 구성	<p>제34조 【구성】</p> <p>①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중앙본부에 전임된 임원 및 조합간부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중앙상무집행위원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원장 · 사무총장 · 부위원장</li> <li>2. 중앙본부 실·처장</li> <li>3. 중앙본부 국장</li> </ol>	<p>제34조 【구성】</p> <p>①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중앙본부에 전임된 임원 및 <b>국장</b>으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중앙상무집행위원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b>위원장</b></li> <li>2. <b>부위원장</b></li> <li>3. 중앙본부 실·처장</li> <li>4. 중앙본부 국장</li> </ol>	<p>사무총장 직위 삭제</p>
제37조 구성	<p>제37조 【구성】 산하조직 대표자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원장 · 사무총장 · 부위원장</li> <li>2. 중앙본부 실·처장</li> <li>3. 지방본부위원장</li> <li>4. 지부장</li> </ol>	<p>제37조 【구성】 산하조직 대표자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b>위원장</b></li> <li>2. <b>부위원장</b></li> <li>3. 중앙본부 실·처장</li> <li>4. 지방본부위원장</li> <li>5. 지부장</li> </ol>	<p>사무총장 직위 삭제</p>
제46조 임원	<p>제46조 【임원】 본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총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원장</li> <li>2. 사무총장과 부위원장</li> </ol>	<p>제46조 【임원】 본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총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원장</li> <li>2. <b>부위원장</b></li> </ol>	<p>사무총장 직위 삭제</p>

	<p>3. 각 실·처장 4. 회계감사위원</p>	<p>3. 각 실·처장 4. 회계감사위원</p>	
<p><b>제49조</b> 임원 및 중앙간부 의 선출</p>	<p>제49조 【임원 및 중앙간부의 선출】 임원 및 중앙간부의 선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</p> <p>1. 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</p> <p>2. 사무총장, 부위원장, 실·처장은 조합원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시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</p> <p>~ 이하 생략</p>	<p>제49조 【임원 및 중앙간부의 선출】 임원 및 중앙간부의 선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</p> <p>1. 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</p> <p><b>2. 부위원장, 실·처장은</b> 조합원 중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시 <b>조합원 중예</b> <b>삭</b> 대의원의 직접·비밀·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</p> <p>~ 이하 생략</p>	<p>사무총장 직위 삭제</p>
<p><b>제52조</b> 임원 및 중앙간부 의 임무</p>	<p>제52조 【임원 및 중앙간부의 임무】</p> <p>①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회계감사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의 의장 및 노사교섭의 대표자가 된다.</p> <p>② 사무총장은 상근하면서 위원장을 보좌하며, 각 실·처장을 지휘 감독한다.</p> <p>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.</p> <p>④ 사무처장은 조합의 사무, 재정, 조합원의 복지후생, 산업안전, 노사교섭 등 처 산하 각국의 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⑤ 조직처장은 조직운영, 교육 및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, 쟁의지도, 의전활동, 대외협력의 증진 및 중.장기 교육훈련 목표 및 방침을 결정하며, 사회적 책임 관련 활동 등 처 산하 각국의 업무를 총괄한다.</p>	<p>제52조 【<b>임원의 임무</b>】</p> <p>①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회계감사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회의의 의장 및 노사교섭의 대표자가 된다.</p> <p><b>② 삭제</b></p> <p>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.</p> <p><b>④ 사무처장은 조합의 사무, 재정, 산업안전 등 조합행정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</b></p> <p><b>⑤ 조직처장은 조직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반업무, 쟁의지도, 의전활동, 대외협력의 증진, 교육훈련 목표 및 방침, 대·내외 조합활동 홍보, 사회적 공헌 활동 등 조직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</b></p>	<p>사무총장 직위 삭제</p> <p>처/실업무 명확화</p> <p>처/실업무 명확화</p>

	<p>⑥ 정책실장은 회사의 경영 및 기술계획을 분석하며, 장·단기 기본 계획 및 방침을 수립 시행하고,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연구와 정책을 개발한다. 또한, 대내 대외 조합활동 홍보계획을 수립하며 국제 교류와 관련된 제반업무 등, 실 산 하 각국의 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⑦ 각 실·처 산하의 국장의 업무는 처무규정에 의한다.</p>	<p>⑥ 정책실장은 회사의 경영 및 기술분석,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한 장·단기 정책 계획 수립 및 시행, 조합원의 복지 후생, 국제교류, 노사 교섭 등 정책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⑦ 삭제</p>	<p>처/실업무 명확화</p> <p>국별 업무를 실·처 업무로 통합</p>
<p><b>제54조</b> 직무대행</p>	<p>제54조 【직무대행】 위원장 유고 시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무총장</li> <li>2. 부위원장</li> <li>3. 사무처장</li> <li>4. 조직처장</li> <li>5. 정책실장</li> </ol>	<p>제54조 【직무대행】 위원장 유고 시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</p> <p><b>1. 삭제</b></p> <p><b>2. 삭제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무처장</li> <li>2. 조직처장</li> <li>3. 정책실장</li> </ol>	<p>사무총장 직위 삭제 및 대행업무 재정립</p>
<p><b>부칙</b></p>		<p>부 칙(2024.03.26)</p> <p>제1조 【시행일】 본 규약은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 【준용】 본 규약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.</p>	